



• 의료보험정보 •

도시지역 의료보험을 알아본다

'89년 7월, 전국민의료보험의 최종단계인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시행된다. 보건사회부에서 제출한 광역조합(廣域組合)의 설립을 주내용으로 하는 의료보험법 개정안이 국민의료보험법의 제안으로 지난 3월, 폐기됨에 따라 도시지역 의료보험 조합의 설립단위는 현행 의료보험법에 의거 시(市)·구(區)로 조정되었다.

I. 시행추진개요

- 실시시기(보험급여 개시) : '89. 7. 1
- 적용대상 : 9백 89만 8천명(2백 47만 5천세대)
 - 60개 시지역주민 중 직장 및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대상자와 의료보호(부조) 대상자를 제외한 전체주민

- 14개 직종의료보험조합(문화예술인, 축산기업 등) 및 4개 임의지역 의료보험조합(부산청십자, 춘성·춘천 등) 소속 피보험자는 각 지역 조합으로 편입(1책 46만여명)
- 5인미만 사업장근로자
- 연금수급자로 공무원의료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도 지역으로 편입(4만 2천명)
- 조합설립단위
 - 시·구단위별로 114개 단독조합 설립(시단위 조합 49개, 구단위조합 65개 신규설립)

II. 보험료의 구성

소득비례보험료(15등급중 해당 등급액) + 재산비례보험료(15등급중 해당 등급액) +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3등급중 해당 등급액) + 세대당 보험료(일정액) + 피보험자당 보험료(피보험자당 일정액 * 피보험자수)

◦ 소득비례보험료

소득세(사업소득등), 농지세(농지소득등)등 과세자료의 소득금액과 주민신고금액으로 하며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하되 조합에 따라 과세자료와 과세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소득에 대한 주민신고 금액을 합산할 수도 있고, 분리하여 등급을 정할 수도 있음.

◦ 재산비례보험료

부과근거자료는 재산과세 표준인 재

산가액(財產價額)과 전세보증금 등 주민신고재산액의 일정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재산가액환산율(財產價額換算率)을 곱한 금액으로 하여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함.

◦ 세대당 보험료

조합형편에 따라 세대당 일정금액을 정한다.

◦ 피보험자당 보험료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를 조합에 따라 정하여 곱한 금액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일정소득미만의 저소득 세대의 경우에는 경감규정을 두고 있다.

◦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조합정관에 따라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함.

III. 도시보험료부과의 특이사항

◦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대당 3,000원이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하되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부과하는 방법, 자동차세액에 따라 부과하는 방법 중에서 택일토록 되어있다.

◦ 전세·월세도 보험료 부과기준에

전세·월세생활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주어지지 않도록 환산가액이 일정수준을 넘을 경우에만(예: 1,000만원 이상) 적용토록 하였다.

◦ 주민의 자진신고 및 저소득자 경감

신고소득과 과세자료상 소득 사이에 사회적 형평이 결여되기 쉬우므로(신고

소득이 높은 경우가 많음) 신고소득에 대해서는 일정한 평가율(예: 30%)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IV. 보험료수준

보험료는 각 조합별로 소요되는 총의료비(조합부담진료비)를 추정해서 전체보험료부과액의 목표액을 책정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부과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므로 의료기관의 이용율이 높은 대도시는 이용율이 낮은 중 소도시보다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조합별로 총보험료부과목표액과 부과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수준도 다르기 마련이다 월평균 세 대당 보험료는 제일높은 서울의 경우 8,700원수준이며 이를 지역별로 보면 보통 6,500원에서 8,000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89년 평균(주민 및 근로자부담) 보험료는 농·어촌 5천 8백원, 직장 근로자 7천 5백원, 공무원 및 교원 1만 1천원과 비교해 보면 농어촌보다는 약간 높고 직장 및 공무원·교원보다는 약간 적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의료보험연합회 자료제공〉

